- 제31회 전국무용제 -

시행계획서

The 31th Korea Dance Festival Operation & Plan

2022년

▶ 기　　간 : 2022년 3월~10월
▶ 주　　최 : 전라남도, 목포시, (사)대한무용협회
▶ 주　　관 : (사)대한무용협회 전라남도지회-제31회 전국무용제 집행위원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Ⅰ. 행사목적

가. 지역 무용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무용 활동의 활성화
나. 지역 무용의 균형발전 도모
다. 전국무용제의 브랜드 확립
라. 무용 예술로 하나 되는 화합의 장

Ⅱ. 추진방침

가. 본 행사는 전라남도, 목포시, (사)대한무용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개최지로 선정된 (사)대한무용협회 전라남도지회가 주관한다.
나. 경연에는 단체부문과 Solo&Duet 부문으로 한다.
다. 경연에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참가하며, 해당 시·도 거주자의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서울 지역 단체는 비경연 참가를 추진하여 전국 규모 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춘다.
외국공연 단체의 초청 등으로 공연의 질적인 향상과 해외무용문화의 경향을 지역 무용계에 소개한다.
라. 지역 무용 활성화를 위해 16개 광역시·도 대표무용단(단체부문)과 안무자(Solo&Duet 부문)는 지역 예선 대회를 거쳐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예선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무용단(단체부문)과 안무자(Solo&Duet 부문)는 해당 지역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단체 또는 안무자가 참가한다.
마.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역의 무용 예술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연 제로 시행하고 대통령상 등 시상을 통해 그 의욕을 고취 시킨다.
바. 창작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참가작품은 창작 무용(신작, 재공연 모두 가능)에 한한다.
사. 본선 대회 개최 경비는 주관 시·도, 예선 대회 개최 경비는 해당 시·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아. 행사 수익금은 주관 (사)대한무용협회 광역시·도지회의 수입으로 하되 무용 예술 진흥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토록 한다.

Ⅲ. 세부추진계획

가. 행 사 명 : 제31회 전국무용제
나. 주　　최 : 전라남도, 목포시, (사)대한무용협회
다. 주　　관 : (사)대한무용협회 전라남도지회-제31회 전국무용제 집행위원회
라.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마. 장　　소 : 지역 예선- 전국 16개 광역시·도 공연장
본선- 전라남도(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바. 기　　간 : 2022년 9월 28일(수) ~ 10월 7일(금)
사. 참가단체 : 전국 16개 광역시·도 대표무용단 및 Solo&Duet 부문의 안무자, 해외단체
아. 공연횟수
1) 단체부문 : 매일 2개 단체, 각 1회 공연 (*사전추첨을 통해 2개 단체를 1개 조로 구성)
2) Solo&Duet 부문 : 매일 5~6개 단체, 각 1회 공연
(*사전추첨을 통해 5~6개 단체를 1개 조로 구성)
자. 참가자(안무자, 출연자) : 유자격자의 참가를 원칙으로 함
단, 출연자는 무자격자가 70%까지 참가할 수는 있으나 이 범위를 넘으면 시상에서 수상자격을 상실함

1) 유자격자

구 분	내 용
안무자	- 지역 예선, 본선 대회 (단체부문) ① 본선 대회 개막일 3년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자, 혹은 개막일 3년 이전부터 해당 시·도에 재직하고 있는 자(해당 시·도 내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재직 증명서만 유효) ② 나이에 제한이 없이 참가 가능
	- 지역 예선, 본선 대회 (Solo&Duet 부문) ① 본선 대회 개막일 1년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자, 혹은 개막일 1년 이전부터 해당 시·도에 재직하고 있는 자(해당 시·도 내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재직 증명서만 유효) ② 만 35세까지 참가 가능(개막일 기준)
출연자	- 본선 대회 개막일 1년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단,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해당 시.도에 활동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 중 하나를 제출한 자 ① 본선 대회 개막일 1년 이전부터 해당 시.도내에 재직(재학)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해당 시. 도내 관련 기관 발행 재직 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 ② 해당 시.도내에서 최근 3년 동안(2019년~2021년) 매년 1회 이상 꾸준히 활동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연 팜플렛 등 각 1종/년 이상 제출 필수 - 매년 1회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중복 출연자가 있을 시에는 감점

2) 무자격자 : 유자격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무자격자로 간주함

3) 본선 대회 참가단체의 출연자는 국·공립 무용단원이 구성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4) 무자격 참가자에 대한 시상 불이익

무자격대상	내 용
안무자	- 개인상 및 단체상 시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향후 5년간 출전자격 박탈 - 공연제작비 (본선)을 지급 불가
출연자	- 출연자 중 70%를 초과하는 인원이 무자격자인 경우, 모든 개인상, 단체상 수상에서 제외 * 출연진 구성원 비율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반올림을 원칙으로 함 * 본선 대회 기간 중, 경연 당일 행사추진 사무국은 각 참가단체 참가자들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확인함
※ 본선의 경우, 행사가 종료된 후라도 제출된 서류와 달리 무자격자로 판명되면 시상금과 공연제작비는 환수될 수 있음 ※ 지역 예선의 경우, 지역 무용제 개최 및 열악한 지역 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 무자격자 비율이 기준보다 높은 단체가 참여했다면, 해당 단체에 공연제작비 지원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단, 안무자가 무자격자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차. 참가작품

1) 창작 무용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음(초연, 재공연 무관)

2) 단체부문의 공연시간은 **30분 이상 40분 이하**, Solo&Duet 부문의 공연시간은 **10분 이상 12분 이하**로 제한함

3)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단체의 안무자는 변경이 불가함

4)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작품명은 변경이 불가하며, 부제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함

카. 제출자료 : 본선 대회에 참가하는 각 광역시·도 대표무용단은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 (사)대한무용협회에 제출해야 할 자료

- 단체부문 (지역 예선, 본선 대회)

	제출자료	내 용
1	**본선 참가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	- 전국무용제 홈페이지(http://dancecountry.koreadanceassociation.org)에서 교부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2	**참가자 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 참가자 전원: 안무자, 출연자,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작품에 출연하는 출연자 전원을 말함 - 본선 대회 개막일로부터 안무자는 3년, 출연자는 1년 이전의 주소 이력이 표시된 주민등록등(초)본
3	**비거주자 중 유자격자 활동 증빙자료**	- 주민등록지가 타지역인 자로서 실제로 해당 시.도에 활동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 1부
4	**참가단체 이력 1부**	- 참가단체의 공연경력 등 주요 연혁
5	**공연계획서 1부**	- 작품명, 안무 의도, 작품 줄거리
6	**공연 대본 1부**	- 대본이 있는 경우 제출
7	**출연자 관련 명단**	- 출연자 전원 명단 1부 - 무자격자 명단(비율 포함) 1부 - 국·공립 무용단 소속 단원 명단(비율 포함) 1부 ※ 작가, 안무자, 출연자 등 참가자 전원의 나이,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요 이력 사항 및 역할 내역(출연자의 경우 참가작품 배역 명기 포함)
8	**창작 윤리 확인서**	- 신청서상 안무자와 실제 안무자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 - 표절 의혹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안무자에게 있음
9	**저작권 활용 동의서**	- 개별 출연자들의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실연권) 사용에 대해 동의
10	**성희롱·성폭력 교육 이수증**	- 사업에 참여하는 전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 후 이수증 제출(필수) - 예술인복지재단, 굿티쳐, DFEH 웹사이트 등
11	**예술인고용보험 증빙자료**	-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구체적인 가입 조건은 첨부자료 참조) - (일반예술인) 성립신고서 및 취득신고서, 상실신고서 각 1부 ※ 일반예술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상실 신고하여 보험료 정산 - (단기예술인) 성립신고서 1부 - 납부확인서 혹은 완납증명서 등 1부
12	**(사)대한무용협회 지회장 추천서 1부**	- 참가단체 해당 지역(지역 예선 대회를 미개최한 지회)

13	**교부금 지급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단체명으로 작성), 견적서, 통장 사본(단체명), 과세-전자세금계산서 / 면세-전자계산서 ※ 고유번호증 단체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모든 서류의 단체명은 동일해야 함
14	**교부금 사용 증빙 서류**	- 현금 인출 하여 사용 불가 / 카드 내역, 이체증으로 증빙 (내역 첨부) - 인건비 사용 시 : 단체와 무용수 간의 계약, 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통장 사본(출연자), 주민등록증 사본(출연자), 이체 내역 - 제작비 사용 시 : 제작단체 사업자등록증, 제작단체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or 전자계산서, 이체 내역
15	**정산 관련**	- (사)대한무용협회 정산 시스템(https://js.dlsol.co.kr/)에 등록 - 정산 보고서 1부 시스템에 첨부
16	**프로그램 제작용 자료 (본선의 경우)**	- 해당 지역 지회장 프로필 1매 - 출연자 전원 프로필 - 참가작 공연 사진(지역 예선 공연 시 촬영 요망) 2매

- Solo&Duet 부문 (본선 대회)

	제출자료	내 용
1	**대회 참가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	- 전국무용제 홈페이지(http://dancecountry.koreadanceassociation.org)에서 교부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2	**참가자 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 참가자 전원: 안무자, 출연자,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작품에 출연하는 출연자 전원을 말함 - 본선 대회 개막일로부터 1년 이전의 주소 이력이 표시된 주민등록등(초)본
3	**비거주자 중 유자격자 활동 증빙자료**	- 주민등록지가 타지역인 자로서 실제로 해당 시.도에 활동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 1부
4	**안무자 이력 1부**	- 안무자의 공연경력 등 주요 연혁
5	**공연계획서 1부**	- 작품명, 안무 의도, 작품 줄거리
6	**공연 대본 1부**	- 대본이 있는 경우 제출
7	**출연자 관련 명단**	- 출연자 전원 명단 1부 - 무자격자 명단(비율 포함) 1부 - 국·공립 무용단 소속 단원 명단(비율 포함) 1부 ※ 작가, 안무자, 출연자 등 참가자 전원의 나이,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요 이력 사항 및 역할 내역(출연자의 경우 참가작품 배역명기 포함)
8	**창작 윤리 확인서**	- 신청서상 안무자와 실제 안무자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 - 표절 의혹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안무자에게 있음
9	**저작권 활용 동의서**	- 개별 출연자들의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실연권) 사용에 대해 동의
10	**성희롱·성폭력 교육 이수증**	- 사업에 참여하는 전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 후 이수증 제출(필수) - 예술인복지재단, 굿티쳐, DFEH 웹사이트 등
11	**(사)대한무용협회 지회장 추천서 1부**	- 참가안무자 해당 지역(지역 예선 대회를 미개최 지회)
12	**교부금 지급 관련 서류**	- 대표자 : 계약서(대표자 직인),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앞)
13	**교부금 사용 증빙 서류**	- 현금 인출하여 사용 X / 카드 내역, 이체증으로 증빙 - 인건비 사용 : 협회와, 출연무용수 간의 계약서, 통장 사본(출연자), 주민등록증 사본(출연자) - 제작비 사용 시 : 제작단체 사업자등록증, 제작단체 통장사본, 전자세

		금계산서 or 전자계산서, 이체 내역
14	**정산 관련**	- (사)대한무용협회 정산 시스템(https://js.dlsol.co.kr/)에 등록 - 정산 보고서 1부 시스템에 첨부
15	**프로그램 제작용 자료 (본선의 경우)**	- 해당 지역 지회장 프로필 1매 - 출연자 전원 프로필 - 참가작 공연 사진(지역 예선 공연 시 촬영 요망) 2매

2) 제출기한 : 지역 예선 및 본선 대회 개최 1개월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① 자료제출 이후, 시·도 대표무용단의 사정으로 참가자 일부 변경 등 기제출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사)대한무용협회 사무국과 주관 (사)대한무용협회 지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② 프로그램이 제작된 이후에는 출연진의 변경이 불가함 (단, 진단서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인정될 시에는 예외로 정함

③ 본선 대회 출연진의 중복출연은 불가함

타. 위원회 구성 운영

1) 심사위원회

단체부문 및 Solo&Duet 부문

- 구성 : 무용계 전문인사 7인 내외로 구성
- 역할 : 심사기준 결정 및 시상 대상 선정

2) 운영위원회(주최 측 구성)

- 구성 :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당연직)을 포함하여 (사)대한무용협회 임원들로 구성,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인사 위촉 가능
- 역할 : 참가단체의 범위, 공연 기간 및 장소, 기타 무용제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발표

3) 집행위원회(주관 측 구성)

- 구성 : (사)대한무용협회 전라남도지회장 등 무용 관련 분야 전문 인사로 구성
- 역할 :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4) 자문위원회(주관 측 구성)

- 구성 : (사)대한무용협회 전라남도지회 관련 인사 및 지역 내 전문 인사로 구성
- 역할 :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자문과 협조

파. 시상 내역

1) 경연부문 단체상

시상부문	시상훈격	수상자(단체수)	상금	비고
대상	대통령상	1개 단체	2,000만원	
금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1,000만원	
은상	전라남도지사상	〃	500만원	
	목포시장상	〃	500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	〃	500만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상 (예정)	〃	500만원	* 부상 : 트로피
동상	전라남도의회 의장상	〃	300만원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	300만원	
	목포시의회 의장	〃	300만원	
계		9개 단체	5,900만원	

2) 경연부문 개인상

시상부문	시상훈격	수상자수	상금	비고
안무상	목포시장상	1명	200만원	
최우수무용수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1명	100만원	
우수무용수상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회장상 (예정)	2명	각 100만원	* 부상 : 트로피
무대예술상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2명	없음	
계		6명	500만원	

※ 시상 훈격은 개최 시·도의 의견을 들어 조정 가능

※ 무대예술상 : 음악, 무대미술, 조명, 의상 중에서 선정

3) Solo&Duet 부문 시상

시상부문	시상훈격	수상자수	상금	비고
최우수작	전라남도지사상	1명	300만원	
우수작	목포시장상	〃	각 100만원	* 부상 : 트로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		
	전라남도의회 의장상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회장상	〃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		
계		6명	800만원	

4) 우수지회 부문 시상

시상부문	시상훈격	수상자수	상금	비고
최우수지회상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1명	300만원	* 부상 : 트로피
우수지회상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1명	200만원	
모범지회상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1명	100만원	
계		3명	600만원	

* 우수지회상은 각 지회에서 주최하는 전국무용제 지역 예선 심사위원 중 1인을 (사)대한무용협회에서 위촉 및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연심사 및 지역 예선(지역 무용제)의 평가 심의 결과로 시상

5) 특별상 부문 시상

시상부문	시상훈격	수상자수	상금	비고
특별상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2개 단체 내외	없음	* 부상 : 트로피
계		2개 단체 내외	없음	

* 특별상은 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그 시기적 상황을 극복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한 단체가 있을 경우에 시상할 수 있음

IV. 추진일정

가. 전국무용제 세부시행계획(안) 수립 : 2021년 12월 중
※ 관계자 회의 시 초안 검토
나. 전국무용제 관계자 회의 개최 : 2022년 2월 26일
다. 전국무용제 지역 예선 대회 개최 : 2022년 3월~5월 중
※ 각 지역에 따라 개최 시기는 다를 수 있음
라. 전국무용제 본선 참가단체 대표자 회의 개최 : 2021년 6월 중
마. 전국무용제 본선 : 2022년 9월 29일(목) ~ 10월 6일(목)

VI. 기타사항

가. 본선 참가 대표무용단에게 본 시행 계획을 반드시 전달하여 본선 참가 지원신청 시 차질이 없도록 협조 요망
나. 전년도 예선지원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곳은 금년도 예선지원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예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공연촬영 : 전국무용제 사무국에서 촬영 예정. 무용단별 별도 자체 촬영을 원할 시 사무국에 문의 요망